

제 1843 호
1994. 8. 20.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이 원 종
편집인 : 공 보 관 김 우 석
전 화 : 731-6111~3
인쇄 : 한국컴퓨터산업(인쇄)주식회사
전 화 : 273-8111~3

시 보

차 례

● 규 칙

제 2632 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종별성규칙	3
제 2633 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양정에관한규칙증개정규칙	8
제 2634 호	서울특별시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을위한의료기관의지정·관리규칙 폐지규칙	13

● 훈령

제 805 호	서울특별시하수도과정사무처리규정증개정규정	13
제 806 호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증개정규정	16

공 고

제 1994-266 호	주택관리업자행정처분공고	21
--------------	--------------	----

〈이면계속〉

공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서울 600년 새로운 탄생”

● 구 고 시

제 35 호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용산)	21
제 1994-36 호	통신시설건축허가고시(구로)	22
제 1994-37 호	도시계획사업(시장)실시계획변경인가(구로)	22
제 1994-39 호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토교)지적승인및고시(강동)	22
제 1994-40 호	도시계획시설(철도)지적승인및고시(강동)	23
제 1994-44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강서)	
제 1994-47 호	도시계획사업(전기공급설비)실시계획인가(강남)	25
제 1994-59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성북)	26
제 94-147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도봉)	27

● 구 공 고

제 94-53 호	건설업면허양도인기공고(영등포)	28
제 1994-130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기공고(강서)	28
제 1994-158 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위한공람공고(구로)	28
제 1994-167 호	공공하수도사용개시공고(동대문)	30
제 1994-170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종로)	32
제 1994-177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송파)	32
제 1994-258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강남)	32
제 1994-260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강남)	33
제 263 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강남)	33

● 사업소고시

제 94-91 호	하천전용허가(한강관리)	33
제 94-95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	34
제 94-96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	34

● 서울지방경찰청고시

제 1994-4 호	자동차운전면허시험신청자지정병원개정	34
------------	--------------------------	----

● 인사 발령

● 추가 계재

시보 제1840호(94. 8. 5자)	서울특별시 중구공고 제94-167호 추가계재	40
----------------------	--------------------------------	----

● 정정 계재

시보 제1841호(94. 8. 10자)	서울특별시 서초구공고 제1994-251호 내용일부정정	40
-----------------------	-------------------------------------	----

규 칙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중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4. 8. 20

서울특별시장 이원종 ④

● 서울특별시규칙제2632호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중
개정규칙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시행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의 제목 중 “연체금”을 “가산금”으로 하고, 농조 제1항 중 “연체금을 가산한”을 “가산금을 포함한”으로 한다.

제17조제5항 본문 및 동항 제1호 중 “연체금”을 “가산금”으로 한다.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199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남부하여 야 하는 연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2호시선〉

라수도요점 수제 및 고지암부

하수도 요금

남일별동지

하수도사용료 요금표

1개월 거주 면적	2.4층 건물		
세 품목별 면적(평수)	1m ² 당 단가(원)		
면적(m ²)	금액(원)	(m ²)	단가(원)
15	360	16~30	46
		31~50	127
		51이상	234
15	360	16~30	46
		31~50	127
		51이상	229
15	360	16~30	46
		31~50	127
		51~100	214
		101~200	364
		201이상	445
200	80,000	201~300	480
		301~500	650
		501이상	150
전용 면적 1m ² 당			
93원			
사용 수량 1m ² 당			
93원			
전용 면적 1m ² 당			
30원			
사용 수량 1m ² 당			
86원			

卷之三

1994.8.21

1843

14

1

133

수남집 보관용

(๘ - ๙)

卷之三

中南民族大学图书馆

· 축 험, 또는 우체국 창구

3) 이 영수증은 금융기

Journal of Health Politics, Policy and Law, Vol. 30, No. 4, December 2005
DOI 10.1215/03616878-30-4 © 2005 by The University of Chicago

2) 1-11.

19

*남부장소: 가까운 시중은행, 농·수

· 축 힘, 또는 우체국 창구

• 100 •

*공무원은 현금을 수납하지 않습니다.

THEORY OF POLYMER

(1 : 1)

◎ 남부장소

- | | | | |
|----------------------------|-------------|-----------|--|
| 1. 사업운행 | 2. 국민운행 | 3. 기후환경운행 | 4. 하수도 유급은행에 관행행에 개선방법을 제시해주시거나, |
| ④ 환경운행 | ⑤ 소통운행 | ⑥ 주민운행 | 5. 하수도 유급은행 관행행에 개선방법을 제시해주시거나, |
| ⑦ 종교기독교운행 | ⑧ 책임운행 | ⑨ 산업운행 | 6. 해당되는 경우 해당 행정부 청부 청부처에 상급되거나 가우 행정부 청부처에 상급되거나, |
| ⑩ 경영기독교운행 | ⑪ 책임질당기독교운행 | ⑫ 경영운행 | 7. 민족기독교 행정부 청부 청부처에 상급되거나 가우 행정부 청부처에 상급되거나, |
| ⑬ 대구운행 | ⑭ 부산운행 | ⑮ 세종운행 | 8. 민족기독교 행정부 청부 청부처에 상급되거나 가우 행정부 청부처에 상급되거나, |
| ⑯ 강원운행 | ⑰ 경남운행 | ⑲ 경주운행 | 9. 민족기독교 행정부 청부 청부처에 상급되거나 가우 행정부 청부처에 상급되거나, |
| ⑪ 경북운행 | ⑬ 충북운행 | ⑮ 충주운행 | 10. 남부기독교 행정부 청부 청부처에 상급되거나 가우 행정부 청부처에 상급되거나, |
| ⑭ 신한운행 | ⑯ 우체국 | ⑰ 통화운행 | 11. 민족기독교 행정부 청부 청부처에 상급되거나 가우 행정부 청부처에 상급되거나, |
| ⑫ 한미운행 | ⑭ 통일운행 | ⑯ 대중운행 | 12. 민족기독교 행정부 청부 청부처에 상급되거나 가우 행정부 청부처에 상급되거나, |
| | ⑰ 강제집행 | | 13. 민족기독교 행정부 청부 청부처에 상급되거나 가우 행정부 청부처에 상급되거나, |
| 기한까지 체납액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 | | 14. 상수도 유급은행에 의하지 아니하는 자 |
| 각별 예방의 고지에 의하여 강제징수하게 됩니다. | | | 하수, 하천수 등을 사용할 때에는 20 |

卷之三

二
1843立

八

10

201

1964.8.20

(속지)

제 1843 호.

A

B

1994. 8. 20.

202

차운도호급	민주당	구	차운도호급	민주당	구
주소	성명		주소	성명	
수취인	수용가		수취인	수용가	
인도 담기 여부	수수도사용료	가산금	인도 담기 여부	수수도사용료	가산금
화물대운 및 운송, 입출고			화물대운 및 운송, 입출고		
운행 조합	지점	수입일부인	199	수입일부인	
수이 정수증은 금융기관 수 님에 단하여 유효합니다.			운행 조합		
취급자인					
(사용자 보관용)			(수납점 보관용)		

40-7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연체금과 납입독촉) ①공공하수도사 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을 납입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가산한 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17조(감면) ①~④(생략)</p> <p>⑤다음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한 연체금을 감면할 수 있다.</p> <p>1. 군부대에 대한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의 연체금</p>	<p>제16조(가산금과 납입독촉) ① 가산금을 포함한 ②(현행과 같음)</p> <p>제17조(감면) ①~④(현행과 같음)</p> <p>⑤ 가산금 1. 가산금</p>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개정된 하수도법(93. 12. 10)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93. 12. 31. 94. .)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 체납시 징수하는 연체금을 가산금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16조).
- 나. 하수도사용료 고지서 등 관련서식을 조례에 맞도록 변경함(안 별지 제12호서식 및 제13호서식).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규칙에관한규칙 종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4. 8. 20

서울특별시장·이원종 ④

●서울특별시규칙제2633호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규칙에관한
규칙종개정규칙

서울특별시지방공무원징계규칙에관한규칙
종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공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전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2의 비위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를 의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별표 2의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

<p>불 적법·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p> <p>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p> <p>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p> <p>제7조제1항 본문단서 중 “행위당시의 여전 기타 사회통념상 거절을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향응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를 “지방공무원법 제73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3년인 비위”로 하고, 동항 제2호 중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약사 및 간호원(지방연구지도 및 의료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규정 별표 2의4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 약사와 별표 2의5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간호원을 제외한다)과”를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와”로 한다.</p> <p>제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p> <p>③ 징계의결요구권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p> <p>〈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7조제1항 본문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p>	
---	--

<별지서식>

화 인 시

1. 경계 협의자의 인적사항

가. 소속 및 직위

(1) 현 재

(2) 협의당사

나. 직급

다. 성명(한글)

(한자)

2. 제7조 제1항 본문단서 해당비위 여부

가. 금품 및 향응수수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나. 공금의 횡령·유용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다. 중점정화대상 비위관계 : (해당됨, 해당없음)

3. 제7조 해당 상벌유무 및 감경비위 여부

가. 제7조 제1항 해당 공직 및 경계유무

공 적 사 항			징계사항[불문(경고)조치 포함]		
포상일자	포상의 종류	시 행 청	일 자	종 류	발 령 청

나. 제7조 제2항 감경비위 여부 : (해당됨, 해당없음)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책임자(소속 및 직위)

(직급)

(성명)

(실인)

징계의결요구권자(직 위)

(관인)

1994.8.20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수수를 제외하고는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중점정화 대상으로 지정된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u>
1. (생략)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직 다만, 6급이하 <u>공무원, 연구사 및 지도사, 약사 및 간호원(지방연구·지도 및 의료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별표2의4 제1호 내지 제3호 해당 약사와 별표2의5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간호원을 제외한</u> 다)과 기능직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장 원 장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직할시장·도지사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직	1. (현행과 같음) 2. 비위행위당시 6급이하 공무원, 연구사·지도사와
3~4 (생략) 제8조(징계의 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② (생략) (신설)	3~4 (현행과 같음) 제8조(징계의 결요구권자의 의견 기재 요령) ①~② (현행과 같음) ③ <u>징계의 결요구권자는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u>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 1. 개정이유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발생된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는 징계를 하지 아니하거나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보호하고, 아울러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징계감경을 제한함으로써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하여 현행규칙을 보완·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경미한 비위에 대하여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함(안 제2조). 나. 지방공무원법의 개정으로 징계 시효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 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의 경우에는 징계감경을 제한하도록 함(안 제7조). 다. 비위행위 당시 중앙행정 기관인

청장(차관급상당 기관장 포함) 이상의 표창이 있는 6급공무원이 5급으로 승진되어 징계요구된 경우 그 표창으로도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

라.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비위에 대하여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징계의 감경 의결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제3항).

서울특별시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을 위한의료기관의지정·관리규칙폐지규칙을 이에 공포한다.

1994. 8. 20

서울특별시장 이원종 ④

● 서울특별시규칙제2634호

서울특별시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을 위한의료기관의지정·관리규칙폐지규칙
서울특별시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을 위한의료기관의지정·관리규칙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1. 폐지이유 및 주요골자

— 서울특별시위생분야종사자등의건강진단을 위한의료기관의지정·관리규칙 (1987. 12. 5 제2202호) 내용이 보건사회부의 성병 및 AIDS관리사업 지침에 포함되어 있고, 보건사회부 지침에 의거 일부내용(지정절차, 시설기준, 취소기준 등)이 변경되어 시행되고 있어, 우리시 등 규칙을 폐지하고자 함.

훈령

서울특별시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중개정 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4. 8. 20
서울특별시장 이원종 ④

● 서울특별시훈령제805호

서울특별시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중 개정규정

서울특별시하수도과징사무처리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가산금) ①납기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가산금 결의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결의는 수납부(제8호 서식)로 병용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결의사항의 확인란에는 담당계장이 실인을 낼인하여야 한다.

제23조제1항 중 “연체금”을 “가산금”으로 한다.

제2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5조(체납관리카드) 납기마감 후 가산금 결의된 체납액은 동별, 하수번호순으로 체납관리카드(제18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7호 서식) 내지 (제9호 서식) 및 (제18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전에 납부하여야 하는 연체금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xli
1843

2

1

209

1994. 8. 20

〈제7호 사식〉

조정종합집계표

19년 월 남기(종합문)

구청장

한국 대조

1

(3)

(3)

※ 장액, 파오남, 총당, 환불의 계단중 상단은 누계, 하단은 당월
합계는 기이.

〈제8호서식〉

수남부

〈제9호 서식〉

() 회 계 조 정 결 의 서

계	계장	계장	과장	국장	구청장	결
						재

조정일자: 년 월 일

납부기한: 년 월 일

조정결의: 제호

대장정리:

조정내역 년도 월납기

(사용료, 점용료, 가산금, 부담금, 감액, 환불, 과오납) 조정

〈제18호 서식〉

채납관리카드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연체금) ① 납기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연체금 결의를 하여야 한다.</p> <p>② 연체금 결의는 조정명세서로써 병용할 수 있으며, 납기마감 후 2개월 이후에도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매월 체납카드에 의하여 결의하여야 한다.</p> <p>③ 연체금 결의사항의 확인란에는 담당계장이 실인을 낼인하여야 한다.</p>	<p>제22조(가산금) ① 납기 마감일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체납액에 대하여는 가산금 결의를 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결의는 수납부(제8호 서식)로 병용할 수 있다.</p> <p>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 결의사항의 확인란에는 담당계장이 실인을 낼인하여야 한다.</p>
<p>제23조(독촉장) ① 연체금 결의가 완료되면 이에 의하여 독촉장을 작성하여야 한다.</p> <p>② (생 략)</p>	<p>제23조(독촉장) ① 가산금</p> <p>.....</p> <p>② (현행과 같음)</p>
<p>제25조(체납관리카드) ① 납기마감 후 2개월째 연체금 결의된 체납액은 동별, 하수 번호순으로 체납관리카드(제18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제25조(체납관리카드) 납기마감 후 가산금 결의된 체납액은 동별, 하수번호순으로 체납관리카드(제18호 서식)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p>
<p>〈개정이유 및 주요골자〉</p> <ol style="list-style-type: none"> 개정이유 개정된 하수도법(93. 12. 10) 및 서울특별시하수도사용조례(93. 12. 31, 94. .)에 따라 관련 조문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서식을 변경하려는 것임 주요골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하수도사용료, 점용료, 기타 부담금 체납시 징수하는 연체금을 가산금으로 용어를 변경함(안 제22조 제1항 내지 제3항). 하수도사용료 조정종합집계표 등 관련서식을 조례에 맞도록 변경함(안 별지 제7호 서식 내지 제9호 서식 및 제18호 서식) 	<p>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중개정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p> <p>1994. 8. 20 서울특별시장 이원종 ⑧</p> <p>●서울특별시훈령제806호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개정규정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설치및운영에관한규정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p> <p>제3조제1항 중 “위원은 각국 주무과장 중에서”를 “위원은 전체 과장중에서”로 하고, “감사(조사)반장을 간사로 한다”를 “감사총괄계장을 간사로 한다”로 한다.</p> <p>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p>

<p>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실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과 소관법령을 합목적으로 해석하여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2.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3.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사항 	<p>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 없는 위법부당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4. 기타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p>제7조제3항 중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를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로 한다.</p> <p>(별지 제1호 서식) 내지 (제3호 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규정은 1994년 8월 21일부터 시행한다.</p>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감사관으로 위원은 각국 주무과장증에서 회의 개최시마다 위원장이 지명하며, 감사(조사)반장을 간사로 한다.</p> <p>제5조(심사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 2.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 3. 공직자가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사항 	<p>제3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공무원교육원장으로, 부위원장은 감사총괄계장을 간사로 한다.</p> <p>제5조(심사대상)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한 제규정으로 말미암아 발생한 위반사항과 소관법령을 합목적으로 해석하여 집행하다 생긴 경미한 비위 2. 적극적으로 민원을 해결하려고 노력하다가 발생한 위반사항과 행정처리상 문제점을 추출하여 창의적으로 개선추진하는 과정에서 생긴 경미한 비위 3. 공직자가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고의성이 없는 위법부당사항 4. 기타 국가적으로 많은 이익이 되고 국민에게 불편이 없는 사업을 수행하다 생긴 절차상의 경미한 비위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관용심사 청구권자) ①~② (생략)</p> <p>③감사결과조치 예정사항 통보서를 받은 피감사 기관의 장은 당해 소속공무원 중에서 특히 관용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된 경우에는 관용 사유에 해당하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감사실시 기관의 장에게 관용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p>	<p>제7조(관용심사 청구권자) ①~② (현행과 같음)</p> <p>③..... 통보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p>

〈별지 제1호 서식〉

감사결과조치예정사항통보서

수신 :

발신 :

소 속	직급	성 명	비 위 요 지	조치개획	제5조제2항의 심사 대상제외 해당여부

비고 : 관용심사 청구는 해당 기관장이 서울특별시관용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에 의하여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과오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심사대상자로 청구

〈별지 제2호 서식〉

관용심사 청구서

번 호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관리기간
	행 위 시	현 재				
비위내용						
관용심사 청구사유 (필요시 증빙서류 첨부)						
소속기관 장의 의견						
기타참고 사 항	① 평소근무성적 ② 관용대상업무의 성격 ③ 직무환경 ④ 업무처리과정과 결과 ⑤ 적극적 추진업무(제5조제1호 각호) 해당 여부					
첨부 ① 근무성적표 ② 기타 관련 증빙자료 등						

〈별지 제3호 서식〉							
관용심사 조서							
관 용 대 상 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관리기간	
	형 위 시	현 재					
비위내용							
	〈청구사유 요지〉						
관용청구 사 유							
	〈소속기관장의 의견〉						
감사부서 검토의견							
기타참고 사 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평소근무성적 ② 관용대상업무의 성격 ③ 직무환경 ④ 업무처리과정과 결과 ⑤ 현직급 승진 연월일 및 보직일 ⑥ 상벌관계 						
	심사결정	요 구 양 정			심 사 양 정		

관 용 대 상 자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직 급	성 명	관리기간
	형 위 시	현 재				

- ① 평소근무성적
- ② 관용대상업무의 성격
- ③ 직무환경
- ④ 업무처리과정과 결과
- ⑤ 현직급 승진 연월일 및 보직일
- ⑥ 상벌관계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1. 개정이유**

의욕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관용조치함으로써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를 양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봉토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1993. 8. 20부터 관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운영결과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위원 선정대상을 각국 주무과장에서 전체 과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문분야 심의 및 청탁매체 등 공정한 식의를 유도함(안 제3조)
- 나. 감사를 감사(조사)반장에서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주관계장인 감사총괄계장으로 변경하여 안정된 회의운영을 도모함(안 제3조).
- 다. 관용심사 대상을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적 시행지침(총무처예규 제273호 1994. 6. 22)에 신설된 성실, 능동적 업무처리 관련비위로서 징계의결을 아니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 보완함(안 제5조).

라. 관용심사 청구기한을 7일 이내에 서 10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7조).

마. 관용심사청구서 심사대상 관련 규정 제5조제1항 각호 중 해당사항을 명시도록 함(안 별지 세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바. 관용심사조서에 평소 균무성적·업무의 성격과 처리과정·직무환경 및 기관장 의견을 제시토록 함(안 별지 제3호서식).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994-266호****주택관리업자행정처분공고**

우리 시가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소재불명으로 주택건설축진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8. 20

서울특별시장

○ 행정처분 내용

업체명	소재지	행정처분	처분일자	처분사유	근거법령
(주)권일주택 대표 권오청(면허번호 제15호)	서초구 양재동 223	영업정지 3개월 (94. 8. 11~94. 11. 10)	1994. 8. 11	기술인력·주택건설축진법 제39조의2	

구 고 시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8. 20

용산구청장

1. 사업명: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이촌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조합장 김주희)(이촌동 206-11)

3. 위치: 용산구 이촌동 208-3 외 7필지
4. 대지면적: 6,748.1m²
5. 규모: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22층 2동 3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6. 총건축면적: 31,103.58m²
7. 시행기간: 1994. 8~1996. 8

◎구로구고시제1994-36호

통신시설건축허가고시

건축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27조,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통신시설(광명전화국)을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1994. 8. 20

구로구청장

1. 사업명: 광명전화국 신축공사
2. 사업목적: 수도권 인근 도시인 광명시와 구로구 독산동 일대의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와 지역민의 요구 및 수요를 적극 수용 대처하는 데 목적을 둔다.
3. 사업인가(건축허가)내용
 - 가. 위치: 구로구 독산동 1093
 - 나.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광초구 방배동 1001-1 한국전기통신공사
 - 나. 사업규모: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

적 11,636.80m²

라. 사업시행기간: 1994. 8. 10~1995. 6. 30

4. 기타: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건축과(860-2390) 및 한국통신건설사업단 건축1국(587-3783~4)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구로구고시제1994-37호

도시계획사업(시장)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65호(1972. 5. 26)로 결정, 동 고시 제563호(1988. 6. 28)로 변경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609호로 지적승인된 다음 도시계획사업(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각우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면경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994. 8. 20

구로구청장

1.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0-48
2. 사업의 종류·명칭: 도시계획사업(시장)
3.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0-48 고척개발(주) 박사진

4. 사업시행규모

(단위: m²)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 지 면 적	4,011	4,004.52	감 6.48
건 축 면 적	2,249.85	2,249.85	변경없음
건 축 연 면 적	10,083.85	11,964.85	증 1,88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1994. 8~1994. 1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당초와 같음
7. 관계도서 및 기타사항은 구로구청 산업

과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강동구고시제1994-39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도로)
지적승인및고시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1. 개정이유**

의욕적으로 일하는 과정에서 잘못을 범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과감하게 관용조치함으로써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를 양양하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봉도를 조성해 나가기 위하여 1993. 8. 20부터 관용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나, 운영결과 미비점이 있어 이를 보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위원 선정대상을 각국 주무과장에서 전체 과장으로 확대함으로써 전문분야 심의 및 청탁배제 등 공정한 심의를 유도함(안 제3조).
- 나. 감사를 감사(조사)반장에서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주관계장인 감사총괄계장으로 변경하여 안정된 회의운영을 도모함(안 제3조).
- 다. 관용심사 대상을 공무원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정시행지침(종무처예규 제273호 1994. 6. 22)에 신설된 성실, 능동적 입무처리 관련비워로서 정계의결을 아니할 수 있는 내용을

추가 보완함(안 제5조).

라. 관용심사 청구기한을 7일 이내에서 10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7조).

마. 관용심사청구시 심사대상 관련 규정 제5조제1항 각호 중 해당사항을 명시도록 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바. 관용심사조서에 평소 균무성적·업무의 성격과 처리과정·직무환경 및 기관장 의견을 제시도록 함(안 별지 제3호서식).

공 고

● 서울특별시공고제 1994-266호**주택관리업자행정처분공고**

우리 시가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소재불명으로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를 위반하여 이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8. 20

서울특별시장

○ 행정처분 내용

업체명	소재지	행정처분	처분일자	처분사유	근거법령
(주)권일주택 대표 권오청(면허번호 제15호)	서초구 양재동 223	영업정지 3개월 (94. 8. 11~94. 11. 10)	1994. 8. 11	기술인력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2 미 확보	

구 고 시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지합니다.

1994. 8. 20

용산구청장

● 용산구고시제35호**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용산구 이촌동 208-3의 7필지상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에 대하여 주택건설촉진법

1. 사업명: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

2. 사업주체: 이촌지구 시민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조합장 김주희)(이촌동 206-11)

3. 위치 : 용산구 이촌동 208-3 외 7필지
4. 대지면적 : 6,748.1m²
5. 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지상 20~22층 2동 340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6. 총건축면적 : 31,103.58m²
7. 시행기간 : 1994. 8 ~ 1996. 8

적 11,636.80m²
 라. 사업시행기간 : 1994. 8. 10 ~ 1995. 6. 30
 4. 기타 : 관계서류는 구로구청 건축과(860-2390) 및 한국통신건설사업단 건축1국(587-3783-4)에 비치하고 있으니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구로구고시제1994-36호

통신시설건축허가고시

건축법 제8조 및 도시계획법 제27조, 통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거 통신시설(광명전화국)을 다음과 같이 건축허가하였기에 이를 고시합니다.

1994. 8. 20

구로구청장

1. 사업명 : 광명전화국 신축공사
2. 사업목적 : 수도권 인근 도시인 광명시와 구로구 녹산동 일대의 지역사회 발전의 기여와 지역민의 요구 및 수요를 적극 수용 대처하는 데 목적을 둔다.
3. 사업인가(건축허가)내용
 - 가. 위치 : 구로구 녹산동 1093
 - 나.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속초구 방배동 1001-1 한국전기통신공사
 - 다. 사업규모 : 지하 1층, 지상 5층, 연면

● 구로구고시제1994-37호

도시계획사업(시장) 실시계획변경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65호(1972. 5. 26)로 결정, 동 고시 제563호(1988. 6. 28)로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609호로 지적승인된 다음, 도시계획사업(시장)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사업 시행변경허가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1994. 8. 20

구로구청장

1. 사업시행자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0-48
2. 사업의 종류·명칭 : 도시계획사업(시장)
3. 사업시행자 주소·성명 : 서울특별시 구로구 고척동 50-48 고척개발(주) 박사진

4. 사업시행규모

(단위 : m²)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 고
대 지 면 적	4,011	4,004.52	감 6.48
전 축 면 적	2,249.85	2,249.85	변경없음
전 축 연 면 적	10,083.85	11,964.85	증 1,881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 1994. 8 ~ 1994. 10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주소·성명 : 당초와 같음
7. 관제도서 및 기타사항은 구로구청 산업

파에 비치하여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 강동구고시제1994-39호

도시계획사업(사회복지시설·도로)
 지적승인및고시

제 1843 호

시

보

1994. 8. 20

1. 강동구고시 제1994-28호(1994. 5. 16)로 결정 및 변경결정된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동구 도시정비과(480-1385)

-7), 지적과 및 관할 동사무소(성내3동, 천호2·3동, 하일동)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8. 20

강동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사회복지시설) 지적승인 조서

연번	시설의 구분	시설명	위치	면적(m ²)	비고
1	신설	사회복지시설	강동구 성내동 385	402.8	

나. 도시계획시설(도로) 지적승인 조서

연번	구분	등급	유형	폭원(m)	연장(m)	시점	종점	비고
1	기정	소로	3	6	55	강동구 천호동 337-98	강동구 천호동 237-102	일부구간 노선연장 및 폭원화장
	변경	소로	2	8	150	강동구 천호동 337-134	강동구 천호동 337-18	
2	신설	소로	2	8	100	강동구 천호동 455-14	강동구 천호동 455-6	
3	신설	소로	1	10	240	강동구 천호동 451-145	강동구 천호동 410-189	
4	신설	소로	3	6	380	강동구 상일동 112	강동구 하일동 삼 22-4	
5	신설	소로	2	8	272	강동구 천호동 458-26	강동구 천호동 458-2	
	기정	소로	4	4	212	송파구 풍납동 66-2	광로 19	일부구간 폭원화장
	변경	소로	3	6	64	강동구 천호동 432-13	강동구 천호동 431-3	

다. 관계도면: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지적과 및 관할 동사무소 비치 도면과 같음.

여 도시계획법 제13조 및 동법시행령 제6조의 권한위임에 의거 지적승인하고 이를 고시합니다.

●강동구고시제1994-40호

도시계획시설(철도)지적승인및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104호(1994. 3. 30)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철도)에 대하여

2. 관계도서는 강동구 도시정비과(480-1385), 지적과 및 관할 동사무소(암사 1·2동, 천호 2·4동, 성내 1·2동)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8. 20

강동구청장

가. 도시계획시설(철도) 지적승인 조서

구분	시설명	세분의 시설	위치	규모	비고
결정	철도	도시철도 (분선)	강동구 암사동 504 일대~ 강동구 성내동 332 일대	L=2,990m B=10~24m	지하철 8호선 분선 신설
"	"	도시철도 (암사정거장)	강동구 암사동 501 일대	A=2,810m ^t	지하철 8호선 정거장 신설
"	"	도시철도 (천호정거장)	강동구 천호동 456 일대	A=2,322m ^t	"
"	"	도시철도 (강동구청 정거장)	강동구 성내동 332 일대	A=2,009m ^t	"

나. 관계도면: 강동구청 도시정비과, 지적
과 및 관할 동사무소 비치도면과 같음.

● 강서구고시제1994-44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변경인가

1. 강서구고시 제1993-78호(1993. 12. 22)
및 강서구고시 제1994-26호(1994. 5. 2)로
실시계획인가 및 변경인가한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 제26
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과 서

울특별시조례 제2413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하
고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강서구청 하수과 및 전설관
리과에 비치하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
인에게 보입니다.

1994. 8. 20

장서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
(도로) 실시계획 변경인가

나. 사업시행 구간 및 규모

사업명	시행구간		규모		도시계획결정	지적고시
	당초	변경	당초	변경		
방화1동 168, 189 일대 하수도개량공사	방화동 189-22 ~175-12간	방화동 189-22~172-4	B=8m L=65m	B=8m L=100m	서고 제196호 (76. 8. 16)	서고 제196호 (76. 8. 16)

다. 사업의 시행자: 서울특별시 강서구청
장

리명세: 별첨조서

라. 사업의 착수 및 준공예정일

 당초: 1993. 10~1994. 5
 변경: 1993. 10~1994. 12

 리명세: 별첨조서

마.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및 건물의 소
재지, 저변·지목 및 소유권 이의의 권리

토 지 조 서

사업명: 방화1동 168, 189 일대 하수도개량공사(잔여구간시행)

소재지지번	지 . 목	지적(m ²)	사용 또는 수 용할 토지면적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당초: 강 서 구 방화1동 173-4	당초: 전	당초: 138	당초: 138	당초: 이종석 신준철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④ 5-1014 강남구 청담동 372-2		
변경: 강 서 구 방화1동 172-4	변경: 전	변경: 138	변경: 138	변경: 이종석 신준철	강남구 대치동 316 은마④ 5-1014 강남구 청담동 37-2		

물 건 조 서

사업명: 방화1동 168, 189 일대 하수도개량공사(잔여구간시행)

번 호	소재지지번	물건의 종 류	구조및 규 격	수량	실재이 용상황	소 유 자		이해관계인	
						성 명	주 소	성명	주소
1	당초: 강 서 구 방화1동 168-45	건 물	당초: 연와조 와 즙 단층주택	당초: 7m ²	당초: 주 거	당초: 조의용	당초: 강서구 방 화1동 168-46		
	변경: 강 서 구 방화1동 168-45	건 물	변경: 연와조 와 즙 단층주택	변경: 7m ²	변경: 주 거	변경: 임정순 조영재	변경: 강서구 방 화1동 168-46 상 동		
2	당초: -	당초:	당초:	당초:	당초:	당초: -			
	변경: 강 서 구 방화1동 168-45	담 장	변경: 블 록 H=1.5m L=20m	변경: -	변경: -	변경: 임정순 조영재	변경: 강서구 방 화동 168-46 상 동		

● 강남구고시제1994-47호

도시계획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

계획인가

서울특별시고시 제1993-93호(1993. 4. 8)
로 변경결정되고 강남구고시 제1993-12호
(1993. 4. 26)로 지적승인된 도시계획시설

(전기공급설비)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 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 인가하고 도시계획법 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고시합니다.

1994. 8. 20

강남구청장

1. 사업시행지: 서울특별시 강남구 수서동 224-7 외 9필지
2. 사업의 종류·명칭: 도시계획사업(전기공급설비) 154kv 세곡변전소
3. 사업시행자: 서울특별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대표 이종훈
4. 사업시행규모
 - 가. 대지면적: 5,820m²
 - 나. 건축규모: 건축면적 - 891.49m²
건축연면적 - 2,160m²
5. 사업시행기간: 인가일로부터 94. 12. 31 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건물의 소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명세: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비치조서와 같음.
7. 개략설계도서: 강남구청 도시정비과 비치조서와 같음.

◎ 성북구고시제 1994-59호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인가

1. 서울특별시고시 제354호(1990. 10. 24)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고시 제40호(1990. 12. 12)로 시각승인된 "길음동 499 주변 도로 확장공사"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 규정에 의거 서울특별시 성북구공고 제1994-153호(1994. 7. 26)로 공란광고하였으며 도시계획법 제25조 및 제26조 및 제27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계획사업('도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합니다.

2. 관계서류는 성북구청 토목과(920-3405)와 전설관리과(920-3400)에 비치하고 토지·전물소유자와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8. 20

성북구청장

가. 사업의 종류: 도시계획사업('도로)

나. 사업시행내역

사업의 명칭	사업시행지	사업의 규모	비고
길음동 499 주변 도로 확장공사	길음동 499-107	폭 8m, 연장 20m	

다. 사업시행자: 성북구청장

라. 착수 및 준공예정일: 사업인가일~ 1995. 12. 31

마.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및 물건의 조서와 지번·지목·지적, 소유권 및 소유

권 이외의 권리명세: 따로 불임.

바. 토지소유자 및 토지수용법 제4조제3항의 관계인 주소·성명: 따로 불임.

따로불임: 토지조서, 물건조서

토지조서

사업시행자명: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삼선5가 411

사업의 종류: 길음동 499주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 (m ²)	소유자 성명	주소	관계인 성명주소	소유권이의의 권리의 종류 및 내용	비고
1	길음동 499-107	대 47	양희민	길음동 499-87			

물 전 조 서

사업시행자명: 성북구청장

사업시행자 주소: 삼선5가 411

의뢰부서: 성북구청 토목과

사업의종류: 길음동 499주변 도로개설공사

일련 번호	소재지 지 번	물건의 종 류	구조 및 규 각	수량	상황	설계 이용 상황	소유자 성 명	주 소	판 계 인	
									소유주 소	성명주소 의 종류 및 내용
1	길음동 499-87 499-88	주택	시멘기와 벽돌	36	주거	양회민	길음동 499-87			1층
	"	"	"	14	"	"	"			2층

●도봉구고시제94-147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고시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체
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
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8. 20

도봉구청장

- 사업명: 민영주택건설사업
- 사업주체: 강남구 삼성동 87
쌍용건설(주) 대표이사 장지환
- 사업시행지의 위치·면적 또는 규모

가. 위치: 도봉구 창동 181-17 외 13필지

나. 사업시행면적

1) 대지면적: 49,001.00m²2) 건축면적: 9,543.86m²3) 연면적: 179,506.08m²

다. 규모: 아파트 20~24층 15개동 1352

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1994. 8~1998. 7

5. 도시계획시설 결정사항

(관계도면은 도봉구청 주택과와 도시정비
과에 비치한다.)

가. 도시계획시설(도로) 변경 결정조서

(단위: m)

구 분	등급	유별	폭원	연장	시 점	종 점	비 고
기 정	소 로	2류	10	360	창동 182-33	창동 170-3	선형변경(L=360m)
변 경	소 로	2류	10	360	창동 182-33	창동 170-3	

나. 도시계획시설(학교) 결정조서

시설명	면적(m ²)	위 치	비 고
학 교	11,613.92	창동 181-17 일대	민영주택건설에 따른 학교신설

6. 의제사항

가. 도시계획법 제4조 및 제5조 제2항에

의한 허가, 동법 제12조에 의한 도시계
획의 결정

- 나. 도로법 제34조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
의 허가
다. 전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 동법 제
15조네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신고
라. 하수도법 제12조에 의한 공공하수도
사업의 허가
마. 속도법 제25조에 의한 축량설과 시속
의 승인
바. 도·소매업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
한 시장의 개설허가

구 공 고

●영등포구공고제94-53호

건설업면허양도인가공고
기술산업법 제13조 제1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양도인가를 하였기 동법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8. 20

영 등 포 구 청 장

양 도 인 가 일	1994. 8. 11		
업 종 및 면 허 번 호	철근 82-10-250, 설비 82-12-246		
인 가 자	영등포구청장	양 도 자	양 수 자
구 분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리공산업(주)	설통건설(주)	
대 표 자	윤 영 편	임 주 인	
영 업 소 재 지	당산동2가 100	강남구 대치동 987-13	
도 금 한 도 액	철근 1,000,000,000원 설비 351,592,000원	철근 1,000,000,000원 설비 351,592,000원	

●강서구공고제1994-130호

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1994. 8. 20

강 서 구 청 장

양 도 인 가 일	1994. 8. 11		
업 종 및 면 허 번 호	창호 92-서울-08-45		
구 분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성진금속	(주)성진금속	
영 업 소 재 지	강서구 방화1동 281-66	강서구 방화1동 281-66	
대 표 자	임 규 설	임 규 성	
도 금 한 도 액	683,014,000원	650,000,000원	

●구로구공고제1994-158호

도시계획사업(도로)실시계획인가를 위한
공람공고

- 서울특별시고시 제186호(1973. 12. 3)로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및 지정고시된
시설(도로)에 대한 실시계획을 인가하고자

도시계획법 제25조의2 및 동별시행령 제27조의2와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람공고합니다.

2. 공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공람장소에 서면 으로 제출하여가 바랍니다.

3. 아래준재민에게는 개별 통지할 것이나 송달 불능시는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가. 공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공람장소: 구로구청 토목과

1994. 8. 20

구로구청장

1) 사업지분지: 서울특별시 구로구 궁

동 188 일내

2) 사업의 종류·명칭: 궁동 188 주변
도로개설공사

3) 사업규모

도로개설 B=6m, L=43m

4) 사업시행자: 구로구청장

5) 사업시행일: 인가일로부터 2년

6) 수용 또는 사용 할 토지·건물의 소
재지, 지번·지목 및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명세: 별첨

7)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자와 토지수
용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관
계인 주소·성명: 별첨

토지조서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적 (㎡)	소 유 자			이 랙 관 계 인			
			주	소	성 면	주	소	성 명	
1	구로구 궁 동 188-11	55	구로구 궁동 188-10	이 한 수	구로구 189-25	궁동	수궁동	세마을금고	
2	189-31	도로	343		국(건설부)				
3	189-84	대지	33	구로구 궁동 189-34	유 경 삼	종로구 종로2 가 55-1	(주)현대상호 전용금고		
						구로구 시흥 동 943-20	(주)서울주류 합동		
						중구 남대문 로2가 9-1	(주)국민은행 (시흥동자점)		
4	189-87	대지	8	구로구 오류동 159 장미빌라 303	김 병 천				
5	189-85	대지	29	동대문구 체기동 271- 15	김 순 천	영등포구 여 의도동 36-3	한국주택은행 (구로직점)		
6	189-44	대지	46	서대문구 경동 13-49	김 철 웅				
7	189-86	대지	8	구로구 궁동 189-55	정 관 수	구로구 궁동 189-29	수궁동	세마을금고	
8	189-46	대지	53	구로구 궁동 189-50	임 성 수				
9	189-68	대지	2	구로구 궁동 189-47	정 영 길				
10	189-89	대지	33	구로구 궁동 190	김 부 길				

제 1843 호

시

보

1994. 8. 20

일련 번호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m)	소 유 자		이 해 관 계 인	
				주 소	성 명	주 소	성 명
11	구로구 공동 189-90	대지	10	구로구 궁동 189-90	임 성 수		
12	189-79	도로	24		국(건설부)		

● 동대문구 공고 제 1994-167 호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1. 하수도법 제6조에 의거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한 다음 공공하수도가 완료되었기 하
수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공공하수도
사용개시를 공고합니다.

2. 관계도면은 동대문구청 하수과에 비치하

여 공고일로부터 15일간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입니다.

1994. 8. 20

동대문구청장

* 공공하수도 설치 내역 및 관계도면: 따
로 불임(동대문구청 하수과 비치).

공공하수도 설치 내역

동대문구청 하수과

연번 계	공 사 명 6건	위 치	공 사 개 요	사 용 개 시 일	비 고
1	용두동 118~103 하수 도 개량공사	용두동 118, 103 주 변	D=450~600 L=380m	94. 6. 30	함유식
2	전농동 90~295간 하 수도 개량공사	전농동 90~295간	D=700 L=295m	"	"
3	답십리 469 의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답십리 469, 전농동 647 주변	D=600 L=288m	94. 6. 25	"
4	용두2동 187~150간 하수도 개량공사	용두2동 187~6~150 -3간	D=450~600 L=230.5m	94. 6. 29	
5	이문동 97~101간 하 수도 개량공사	이문동 97~4~180 14간	D=600 L=203m	94. 6. 25	"
6	답십리동 952 의 2개 소 하수도 개량공사	답십리 952, 용두동 102, 장안동 188 주변	D=450 L=206.5m	94. 6. 29	"

공공하수도 설치인가 현황

동대문구(관거설치)

(합류식)

구 분	인 가 현 황							비고
	배 수 구역명	분 류	관 종	구 경 (m/m)	연 장 (m)	사 업 비	사 업 기 간	
계	6건				1,603	383,758		

구 분	인 가 현 황								비고
	배수 구역명	분류	관종	구경 (m/m)	연장 (m)	사업비	사업기간	사업 시행기관	
용두동 118~103 간 하수도 개량공 사(94. 2. 24)	제기	관거	흡관	450~ 600	380	102,304	94. 3. 27~ 94. 6. 24	동대문구청 하수과	94-1
전농동 90-295 간 하수도 개량공 사(94. 2. 24)	전농	"	"	700	295	81,932	"	"	"
답십리 469 외 1 개소 하수도 개량 공사(94. 2. 24)	전농 청계	"	"	600	288	75,531	94. 3. 28~ 94. 6. 15	"	"
용두2동 187~150 간 하수도 개량공 사(94. 2. 24)	제기	"	"	450~ 600	230.5	35,997	94. 3. 25~ 94. 6. 22	"	"
이문동 97~101간 하수도 개량공사 (94. 2. 24)	이문	"	"	600	203	47,562	"	"	"
답십리동 952 외 2개소 하수도 개 량공사(94. 2. 24)	전농 제기 장안	"	"	450	206.5	40,432	"	"	"

공공하수도 사용개시 공고 대장

동대문구

연번	공고 번호	공사명	위 치	사용개시 연월일	배수 구역	하수도 개요		합·분류식	비고
						관경 (m/m)	길이 (m)		
계		6건					1,603		
1	94-	용두동 118~ 103 하수도 개 량공사	용두동 118, 103 주변	94. 6. 30	제기	450~ 600	116 264	합류식	94-1
2	94-	전농동 90-295 간 하수도 개 량공사	전농동 90-295 간	"	전농	700	295	"	"
3	94-	답십리 469 외 1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답십리 469, 전 농동 647 주변	94. 6. 25	전농 청계	600	288	"	"

제 1843 호

시

보

1994. 8. 20

연번	공고 번호	공사명	위치	사용개시 연월일	배수 구역	하수도 개요		합·분류식	비고
						관경 (m/m)	길이 (m)		
4	94-	용두2동 187-1 150간 하수도 개량공사	용두2동 187-6 ~150-3간	94. 6. 29	제기	450~ 600	116 114.5	합류식	94-1
5	94-	이문동 97-101 간 하수도 개량공사	이문동 97-4~ 180-14간	94. 6. 25	이문	600	203	"	"
6	94-	답십리 952 외 2개소 하수도 개량공사	답십리 952, 용두동 102, 장안동 188 주변	94. 6. 29	전농 제기 장안	450	206.5	"	"

● 종로구공고제1994-170호

를 공고합니다.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고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 규정에 의하여 이

1994. 8. 20

종로구청장

인가일자	업종 및 면허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재지	대표자	상 호	소재지	대표자
94. 8	조경식재 서울 18-09	공간조경(주) 신동 60	종로구 총 박병철	상우종합 개발(주)	종로구 60	충신동 박병철	
"	조경시설물 서울 19-09	"	"	"	"	"	"

● 송파구공고제1994-177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공고

건설업법 제13조제1항 규정에 의거 건설업 양도인가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같은 법 제14조제3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8. 20

송파구청장

- 양도인가 연월일 : 1994. 8. 12
- 양도되는 건설업의 업종 및 면허번호 : 철물·공사업(면허번호 82-11-116), 설비공사업(면허번호 82-12-200)

3. 양도자·양수자의 주된 영업장 소재지·상호 및 성명

가. 양도자 : 정준건설(주) 대표 서해용
서울특별시 송파구 삼전동 132-13

나. 양수자 : (주)우리금속 대표 권인환
경기도 강화군 선원면 창리 525-1

● 강남구공고제1994-258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기에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강 남 구 청 장

1994. 8. 20

인가 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 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94. 8	조경시설물설치공 사업(인천 19-11)	정동조경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59-3	이천봉	벽전건설(주)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59-3	최충언

◎강남구공고제1994-260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예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8. 20

강 남 구 청 장

인가 일자	양 도 업 종 및 면 허 번 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1994. 8. 11	철근콘크리트공사업 (92-서울-10-468)	한서토건 (주)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59-6	심윤수	대신건설 (주)	충북 청주시 사직동 142-6	이선광 황태근

◎강남구공고제263호

전문건설업양도인가
건설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의 양도를 인가하였

기예 동법시행령 제19조제6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8. 20

강 남 구 청 장

인가 일자	양도업종 및 면허 번호	양 도 자			양 수 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상 호	소 재 지	대표자
94. 8	미장방수공사 업(82-03-90)	칠성공업(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9-5	왕기영	칠성방수(주)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129-5	왕점동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
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4. 8. 20

한강관리사업소장

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94-94호
하천점용허가

허 가 연 월 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 용 목 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1994. 8. 11	서울특별시 영등포 구 여의도동 85-1 선(한강) 외 2개소	하천	80.67m ² (26.89m ² ×3개소)	이동식 음 식 판매시 설(스낵카)	94. 8. 30 ~ 95. 8. 29	서울 특별시 영등포구 여 의도동 13-31 운재철	거한개발(주) 대표이사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94-95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4. 8. 20

한강관리사업소장

허 가 연 월 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1994. 8. 11	서울특별시 강동구 암사동 606-1 선(한강) 외 14개소	하천	1,394.205㎡	식음료 판매시설 (매점)	94. 8. 28 ~ 95. 8. 27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3-31	거한개발(주) 대표이사 윤재철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94-96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4. 8. 20

한강관리사업소장

허 가 연 월 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를 받은 자	
						주 소	성 명
1994. 8. 11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45-24선(한강)	하천	61.2㎡	이동식 현장사무실	94. 8. 6 ~ 95. 8. 5	서울특별시 마포구 합정동 345-24	백종섭

서울지방경찰청고시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고시
제1994-4호

자동차운전면허시험신체검사
지정병원개정

도로교통법 제74조 및 동법시행령 제45조에 의거 자동차운전면허신체검사 지정병원을 다음과 같이 개정 고시합니다.

1994. 8. 20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
운전면허 신체검사 지정병원 중 승인번호 11-50, 11-5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승인번호	병원명	의사면허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관리반 경비전화	지정 해제일
		의 사 성 명					
11-50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부설 서부의원	15032		마포구 상암동 338-1	374-6811 ~7		
		김순창					
11-51	사단법인 정해복지재 1부설의원 한신종합 건강진단센터	8164		서초구 잠원동 72-2	595-5671 ~3		
		임종명					

부 칙

이 고시는 1994. 8. 20부터 시행한다.

인사 발령

5급 기술직 인사교류

◎1994년 8월 10일자

영 제395호

연번	성명	발령 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강 순 천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강동구	지방토목 사무관

보건연구사 면직

◎1994년 8월 10일자

영 제396호

연번	성명	발령 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오 영 택 630607-1405214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보건환경 연구원	지방보건 연구사

8급 기술직공무원 의원면직

◎1994년 8월 10일자

영 제397호

연번	성명	발령 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김 운 재 540615-1645948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상수도 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서기

9급 기술직공무원 정규임용

◎1994년 8월 15일자

영 제398호

연번	성명	발령 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김 동 육 690317-1802617	지방수도토목서기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서기보 시보
2	신 동 철 700121-1006819	"	"	"
3	김 지 원 591009-1478017	"	"	"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	직
			부서	급
4	박미영 690216-2252012	지방수도토목서기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서기보 시보
5	엄형배 670923-1057621	"	"	"
6	차승환 660906-1232912	"	"	"
7	전성호 650302-1017914	"	"	"
8	박웅희 621211-1533911	"	"	"
9	이상환 660701-1810219	"	"	"
10	박행종 670927-1011410	"	"	"
11	박용대 641103-1009314	"	"	"
12	장기덕 681272-1002013	"	"	"
13	이우찬 660425-1010227	"	"	"
14	김상교 670418-1721918	"	"	"
15	김대용 660616-1025216	"	"	"
16	김수영 660403-1636718	"	"	"
17	류광창 671205-1253169	"	"	"
18	김정엽 700408-1174015	"	"	"
19	성기옥 700130-1449310	"	"	"
20	권기섭 630307-1779316	"	"	"

제 1843 호 시 보 1994. 8. 20

연번	성 명	발령 내용	현 직	
			부서	직급
21	최 덕환 640525-1468817	지방수도토목서기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서기보 시보
22	이 형수 670619-1543215	"	"	"
23	강 태규 650210-1468724	"	"	"
24	이 연창 670401-1483115	"	"	"
25	김 용만 671128-1559815	"	"	"
26	오택수 670619-1150311	"	"	"
27	김영환 690731-1328323	"	"	"
28	신보섭 690605-1056414	"	"	"
29	강은영 740125-2241313	"	"	"
30	강정구 671226-1046110	"	"	"
31	조성환 660311-1896317	"	"	"
32	배채삼 641225-1920521	"	"	"
33	이희숙 711009-2052517	"	"	"
34	김미경 700918-2143621	"	"	"
35	전동근 650225-1113111	"	"	"
36	노운학 690522-1558218	"	"	"
37	조강수 710224-1558817	"	"	"

제 1843 호

시

보

1994. 8. 20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38	황 청 년 610405-1447411	지방수도토목서기보	상수도사업본부	지방수도 토목서기보 시보
39	이 강 준 690121-1539117	"	"	"
40	전 완 규 610920-1167821	"	"	"
41	김 용 섭 651212-1655438	"	"	"
42	백 광 인 690117-1644625	"	"	"
43	양 윤 선 700323-2029732	"	"	"
44	박 종 배 660923-1646413	"	"	"
45	김 진 성 710527-1392916	"	"	"
46	이 응 선 691101-1068620	지방화공서 기보	"	지방화공 서기보시보
47	이 윤 용 671206-1226417	"	"	"

9급 기술직공무원 인사교류

◎1994년 8월 17일자

영 제399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유 영 애 690703-2804713	서울특별시 전입 성동구 전출	대구직할시	지방환경 서기보
2	임 명 숙 690210-2690620	대구직할시 전출	성동구	"

3급 공무원 면직

◎1994년 8월 10일자

영 제400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주 화 종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내무국	지방 부이사관

3·4급 승진임용

◎1994년 8월 10일자

영 제401호

연번	성 명	발령 내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이 용 재	지방부이사관에 임함 서울대공원관리사업소장에 보함	서울대공원 관리사업소장 직무대리	지방 서기관 직무대리
2	권 택 상	지방서기관에 임함 의안담당관에 보함	의안담당관 직무대리	지방행정 사무관

9급 기술직공무원 면직

◎1994년 8월 10일자

영 제402호

연번	성 명	발령 내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김 기 언 570824-1552626	원예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하철 건설본부	지방통신 서기보

기능직공무원 정규임용

◎1994년 8월 12일자

영 제403호

연번	성 명	발령 내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유 인근 601123-1558413	지방운전원(10등급)에 임함	가양하수 처리(사)	지방운전원 서보(10등급)

기술직 5급공무원 보직 명령

◎1994년 8월 10일자

영 제30호

연번	성 명	발령 내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강 순천 360118-1046311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시설부 개발과장에 보함	공원녹지 관리사업소 (강동구)	지방토목 사무관
2	김 규태 390222-1026016	공원녹지관리사업소 시설부 관리과장에 보함	공원녹지 관리사업소 (개발과)	지방임업 사무관

추가계재

시보 제1840호(94. 8. 5자)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중구공고 제94-167호 회계관계공무원직인신조공고에 있어 다음 인영이 누락되어 이를 추가게재합니다.

인 영 대 장

관인명	날인 연월일	1994년 7월 27일 현재
서울 토지구획정리비 특별회계 중구 분임 채권 관리관		

정정계재

시보 제1841호(94. 8. 10자)에 게재된 서울특별시 서초구공고 제1994-251호(전문건설업면허취소)의 내용 중 일부 오류가 있어 다음과 같이 정정계재합니다.

○ 정정내용(업종 및 면허번호)

오류사항	정정사항	비고
비 계 92-12-34	비 계 92-서울 07-02	